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8월 1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시내 공사장 및 시설물에 대한 상시순찰 등 안전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어사대(단속반)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안전단속 전반에 대한 전문분야별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을 대폭 확충(60명 → 200명)하여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소하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(안 제31조)
- 나.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할 수 있는 용어(위원 등) 및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1조 및 제3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18. 6. 7. ~ 6. 27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도 붙임
- (3) 비용추계서: 별도 붙임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”을 “2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, 자문단원”으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
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단장·부단장 및 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”을 “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”으로, “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”를 “있다.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원”을 “자문단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60명 이내의 위원</u>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<u>자로</u> 한다.</p> <p>1. 건축·토목·전기·가스·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<u>자</u>(이하 "전문가"라 한다)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제33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<u>단장·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</u>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<u>만료전이라도</u> 시장은 <u>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</u></p>	<p>제31조(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·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20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</u>하여 구성하되, <u>자문단원</u>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<u>으로</u> 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 <u>사람</u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자문단 위원의 임기) <u>자문단원</u>----- ----- . ----- ----- <u>만</u> <u>료 전이라도</u> 시장이 <u>자문단원</u>----- --- <u>있다</u>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한다.</u></p> <p>1. 품위손상, 장기불참 등 <u>위원</u>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	<p>1. ----- <u>자문단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(서울시 안전어사대 운영 관련)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을 상시 직접 단속처벌하는 서울시안전어사대를 구성 운영함에 있어 비용 발생(외부 자문수당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대상 : 서울시 안전어사대(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, '18. 3. 21.)
 -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을 상시 직접 단속처벌하는 단속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 현장구현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안전어사대를 구성 운영함에 있음
 - ※ 안전어사대 구성인력
 - 어사(어사경), 어사대원(시간제임기제마급, '18년 20명, '19년 40명), 민간전문가('18.'19년 각 100명)
- 전제
 - 5개권역(도심권, 동북권, 동남권, 서북권, 서남권) 1일 5개팀, 팀별 4~6명으로 구성
 - 팀당 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, 주5일, 월4회 자문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
- 기간 : 2018. 7월부터 운영
- 방법 : 안전어사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항목별로 산정하여 합산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요약 ≍ 1,440백만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18년)	2차년도 (2019년)	합계
외부 자문수당	360	1,080	1,440

○ 세부내역

- '18년 소요 예산(7월~12월, 6개월 기준)

연간	- 10개팀 한달 투입비용 60백만원 × 6개월 = 360백만원
월간	- 외부 자문수당 : 10개팀 × 150천원/일 × 5일/주 × 4주 × 2인 = 60백만원

- '19년 소요 예산(1월~12월, 12월 기준)

연간	- 30개팀 한달 투입비용 90백만원 × 12개월 = 1,080백만원
월간	- 외부 자문수당 : 30개팀 × 150천원/일 × 5일/주 × 4주 = 90백만원

※ 재원확보

- '18년 : 외부 자문수당(재난관리기금 예산) 활용
- '19년 : 일반회계 예산 활용

※ 상기 비용추계는 당초 계획서 상의 예산임